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1일, 조계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0.) 상정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계원의원)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구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36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11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국가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재 산림청은 산불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찰 56개소, 국가유산 12개소, 휴양림 29개소, 주거지역 16개소, 학교 5개소 등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됨.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은 산불 발생 시 산림과 인접하여 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주변으로 산림의 수종을 고려하여 이격공간을 확보한 후 수목의 수관 끝이 서로 닿지 않는 정도로 간벌하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동 사업은 현재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범위, 조성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다는 시행예정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

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임의 입목벌채등

현행법은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②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④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⑤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다만,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입목벌채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행 법령에 따라 기준벌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가 및 신고에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되어 신속한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입목벌채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 입목벌채등의 요건 중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새로이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산불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나, 허가·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